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37 발의연월일: 2021. 11. 10.

발 의 자:한병도·강준현·강훈식

박재호 · 신현영 · 오영환

유정주 • 이정문 • 이학영

임오경 · 임호선 · 최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방세 감면 및 최소납부세제 유예 종료 시에는 과도한 지방 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 및 관리운영 부실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3조제5항: 2022년 1월 1일

3의2. 제15조제2항: 2028년 1월 1일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 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2022년 12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 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 에 관한 적용례) -----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 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 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 1. 2. (생략)
- 3.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 2022년 1월 1일

<신 설>

4.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3. 제63조제5항: 2022년 1월 1

 일
- 3의2. 제15조제2항: 2028년 1월 1일
- 4. (현행과 같음)